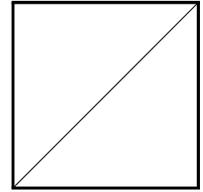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              |                       |                  |
|--------------|-----------------------|------------------|
| 의안번호         | 제 1 호                 | 보<br>고<br>사<br>항 |
| 보 고<br>연 월 일 | 2023. 1. 11.<br>(제1차) |                  |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김 소 영    |
| 제출 연월일 | 2023. 1. 11. |

## 1. 보고주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12.22.)하였으나, 변경 예고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의 적용시점과 기존 규제의 계속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변경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회사 및 감사인의 불필요한 업무 소요를 줄이고자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감독당국, 회계업계, 기업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금감원과 한공회 등 유관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내용을 시장에 전파하여, 변경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적용과 관련한 감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2.12.22 입법예고)

##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안 보고

### 1. 보고이유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금융위, '22.10.6.)의 후속조치로 대형비상장 회사 기준 변경\*을 포함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2.1.)

\* 대형비상장사 기준을 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을 '23.1.1일로 소급

○ 자산 1~5천억 해당 비상장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등이 면제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23년 감사계약(2.14일까지 감사계약 체결 의무) 절차가 진행 중인 바,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감사계약을 보다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

⇒ 이에 변경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회사 및 감사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①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관련

○ (쟁점)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23회계연도 감사계약 체결시 대형비상장회사에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 공통적용)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등

⇒ (적용) 감사인 선임절차는 시행령 개정 전이더라도 변경될 기준에 따라 각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내

## ② '22사업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 (쟁점)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22사업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증선위·감사인, 정기총회 6주전)가 면제되는지 여부

⇒ (적용) '22사업연도의 감사 前 재무제표는 '21년말 기준(자산 1천억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여부가 결정된 회사에 제출의무 既부과\*

\* 시행령 개정안(부칙)은 대형비상장회사 해당여부를 '22년 말 기준(자산 5천억)으로 판단하므로 '21년말 기준(자산 1천억)으로 결정된 '22년 대형비상장사의 '22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존속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22사업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는 증선위와 감사인에 제출하도록 안내

## ③ 기존 주기적 감사인 지정처분 관련

○ (쟁점) '23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될 기업에 이미 부과한 감사인 지정\*(3년)은 유지할 것인지 여부

\* (3년차) 28개사, (2년차) 33개사, (1년차) 63개사 // 미부과 회사 260개사

\*\* 동 기업들은 변경 기준(자산 5천억 이상)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미 해당

⇒ (적용) 감사인 지정을 아직 받지 않은 회사와의 형평성, 이미 체결된 감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지정처분은 유지하되, '24년 지정부터는 면제

\* '22.11.15 본통지한 124개사 모두 감사계약 체결 완료

- 다만 이미 체결한 '23년 감사계약은 과도한 보수가 청구되지 않도록 감사인들을 지도·감독

## 3. 향후계획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동 보고내용에 따라 감독 업무 수행

## 관계 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1천억원을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br/>-----<br/>--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u>1천억원</u></p> <p>2.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u>1천억원</u></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5천억원</u></p> <p>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
| <p>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민법</u>」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u>한국회계기준원</u>”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1. (생략)</p> | <p>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br/>-----<br/>-----<br/>-----<br/>-----<br/>-----<br/>-----<br/>-----<br/>-----</p> <p>1. (현행과 같음)</p>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신 설>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1. 2. (생략)

<신 설>

2. 회계처리기준 해석

3.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 ----- 회계처리기준 및 공시기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 설>

3. (생략)

② ~ ⑩ (생략)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④ ~ ⑥ (생략)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생략)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다. 금융회사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 -----  
-----  
-----  
-----  
-----.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다만, 내부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

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  
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  
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  
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  
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  
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  
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  
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  
하였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이나 감사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  
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  
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  
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  
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금융위원회        |
| 소관부서  | 기업회계팀        |
| 연 락 처 | 02-2100-2693 |